

2-4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

사업성격 신규 / 지속 임기구분 임기 내 / 임기 후 사업주체 국가 / 서울시 / 자치구

우리 구 특성 및 지역적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여
구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

1 현황 및 정책목표

현황

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	저소득가구 매입임대주택	지역맞춤형 임대주택	지역현안 맞춤형임대주택	주거위기안심 (디딤돌)주택
3,440호	1,480호	추진중	추진중	7호

정책목표

-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우리 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근거 마련
- 우리 구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
- 저소득 긴급 주거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안심(디딤돌)주택 운영

2 추진계획 (정책개요)

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

- 제정일자 : 2019. 9월 중(예정)
- 제정목적
 -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권 보장
 - 주거복지 실태조사 등 관악구형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 근거 마련
- 조례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 및 주거복지와 주거약자에 대한 개념 규정
 - 단체장의 책무 명시
 - 기타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

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

- 지원대상 : 기초수급자 등,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 등
- 공급목표 : 5,000호
- 지원내용 : 9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 지원(본인부담 5%)
- 지원조건 : 지원 보증금액에 대해 연 2% 이자 부과
- 입주기간 : 2년 단위 계약(9회 연장 가능, 최장 20년)

저소득가구 매입임대주택

- 지원대상 : 기초수급, 한부모가족 등
- 추가공급 : 3,000호
- 지원내용 : LH 소유의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
- 공급조건 : 주변시세의 30% 수준 임대료 부과
- 입주기간 : 2년 단위 계약(9회 연장 가능, 최장 20년)

SH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

- 사업내용 : 우리 구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
- 공급목표 : 70호
- 지원자격
 -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가구
 -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% 이하인 가구
- 주택유형 : 청년 창업인, 예술인, 신혼부부 주택 등
- 임대료 : 매입대상물건 감정평가액의 30~50%

LH 지역현안 맞춤형임대주택

- 지원대상 : 주거급여 대상자 중 여인숙, 고시원 거주 등 주거불안가구
- 공급규모 : 50호
- 임대기간 : 2년 단위 계약(2회 연장 가능, 최대 6년)
- 사업방식 : LH공사 주택 리모델링 실시 및 자치구 입주대상자 선정·관리

주거위기 안심(디딤돌)주택 운영

- 사업내용 : LH로부터 공급 곤란 주택을 제공받아 구 예산으로 개·보수한 후 관내 긴급 주거위기 가구에 공급
- 지원대상 : 화재,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
- 공급규모 : 15호
- 입주기간 : 6개월(1회 연장 가능, 최대 1년)
- 입주자선정 : 관악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(소위원회 포함) 심의·의결

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

구 분	2018		2019				2020				2021				2022				비고
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
1	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																		
2	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																		
3	저소득가구 매입임대주택																		
4	SH 지역맞춤형 임대주택																		
5	LH 지역현안 맞춤형 임대주택																		
6	주거위기 안심(디딤돌)주택																		

연차별 소요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임기 내						임기 후
		소계	2018	2019	2020	2021	2022	
계	207	207	60	69	46	16	16	-
국비	-	-	-	-	-	-	-	-
시비(특교포함)	-	-	-	-	-	-	-	-
구비(기금)	207	207	60	69	46	16	16	-
기타(민자)	-	-	-	-	-	-	-	-

3 공약달성 확인지표

구 분	확인지표	단위	목표	2018	2019	2020	2021	2022
1	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	-	조례제정	-	조례제정	-	-	-
2	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	호	5,000	3,440	390	390	390	390
3	저소득가구 매입임대주택	호	3,000	1,480	380	380	380	380
4	SH지역맞춤형 임대주택	호	70	-	20	20	20	10
5	LH지역현안 맞춤형 임대주택	호	50	-	10	10	15	15
6	주거위기 안심(디딤돌)주택	호	15	7	5	3	-	-

4 협 력 사 항

- 중앙정부 · 서울시 협력사항(제도, 재정, 권한) : 해당 없음

5 기 대 효 과

-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발굴·추진의 연속성 확보
- 가구특성 및 소득계층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에 기여